

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교통정책과)

제출일 : 2022. 6.

1. 제안이유

- 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 현행 모든 시설물 일괄 경감을 심의를 통한 시설 및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적 경감으로 변경하여 부담금 경감의 합리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(안 제6조제4항)
 - 경감 차등화를 위한 대상 시설물 및 경감 비율 규정 정비
(모든 시설물 → 시설물, 30%를 → 100분의 30 범위에서)
- 나.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9조의2 ~ 제9조의3)
 -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원 규정
 - 심의사항 및 의사·의결 정족수 규정
- 다. 위원 등의 관련 사항(안 제9조의4 ~ 제9조의7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
 - 수당 등 관련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%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,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
-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,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